기획재정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5. 10. 22.(수) 08:00

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

- '25.12.31.까지 휘발유 △7%,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(LPG)부탄 △10% 인하

[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]

정부는 '25.10.31. 종료 예정인 **유류세 한시적 인하** 조치를 **'25.12.31.까지 2개월 연장**하되, **휘발유**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△10%에서 **△7%**로, **경유 및 액화석유가스(LPG)부탄**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△15%에서 **△10%**로 조정한다.

이는 최근 **유가 및 물가 동향, 재정에 미치는 영향** 등을 **고려**하여 유류세 인하의 **환원을 추진**하되, 국민의 **유류비 부담**이 **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**하기로 한 것이다.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**휘발유**는 △ **57원**/리터(ℓ), **경유**는 △**58원**/리터(ℓ), **액화석유가스(LPG)부탄**은 △**20원**/리터(ℓ)의 세부담이 경감된다.

<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>

(단위 :원/ℓ)

유종	인하전 탄력세율	'21.11.12. ~ '22.4.30.	'22.5.1. ~ 6.30.	'22.7.1. ~ 12.31.	'23.1.1. ~ '24.6.30.	'24.7.1. ~ 10.31.	'24.11.1. ~ '25.4.30.	'25.5.1. ~ 10.31.	'25.11.1. ~ 12.31.
		△20%	△30%	△37%	휘발유△25%	△20%	△15%	△10%	△7%
					경유△37%	△30%	△23%	△15%	△10%
					부탄△37%	△30%	△23%	△15%	△10%
휘발유	820	656(△164)	573(△247)	516(△304)	615(△205)	656(△164)	698(△122)	738(△82)	763(△57)
경유	581	465(△116)	407(△174)	369(△212)	369(△212)	407(△174)	448(△133)	494(△87)	523(△58)
부탄	203	163(△40)	142(△61)	130(△73)	130(△73)	142(△61)	156(△47)	173(△30)	183(△20)

* ()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

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」,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**입법예고**(10.23.~24.), 관계부처 협의 및 **국무회의** 등을 거쳐 **'25.11.1.부터 시행**할 예정이다.

[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]

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**매점매석 행위**를 **방지**하기 위해 「**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**」를 **시행**(10.22.)하였다.(☞참고1)

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**'25.10월 한 달간** 한시적으로 **유류 반출량**을 **제한**(휘발유·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%, 액화석유가스(LPG)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%)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**판매를 기피**하거나 특정 업체에 **과다 반출**하는 행위 등이 **금지**된다.

※ 고시 위반시 시정명령 등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*」 적용에 필요한 조치 이행

* 시정명령(제9조)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(제26조) 등

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**소비자 피해**가 **발생하지 않도록** 기획재정부는 산업부·국세청·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**철저히 관리**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, **산업부·석유관리원·소비자원 및 각 시·도**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**신고 접수**를 **'26.1.31.까지 받을 예정**이다.(☞참고2)

※ 참고: 1.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
2.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

담당 부서	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15-4330)
		담당자	사무관	구본녕 (kbn88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APEC 2025 KOREA 10.27.~11.1. 경주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개별소비세법령 및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 물품)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.

1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
2.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물품

제3조(적용대상자)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.

1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(이하 “석유정제업자”라 한다)
2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(이하 “석유수출입업자”라 한다)
3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(이하 “석유판매업자”라 한다)
4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(이하 “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”라 한다)
5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(이하 “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”라 한다)

제4조(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,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) ① 석유정제업자는 2025년 10월 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%를, 2025년 10월 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%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석유수출입업자는 2025년 10월 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24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%를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25년 10월 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신고 물량이 2024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%를 초과하여 수입신고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2024년 11월 1일 이후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,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간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7조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, 고시 제4조제1항의 “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”, 같은 조 제2항의 “2024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”, 같은 조 제3항의 “2024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”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,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24년 10월에 반출·판매 또는 수입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.

⑤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, 수출물량 급증, 생산설비 신·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) ①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2025년 10월 중 제2조 각 호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신고센터 설치)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·도는 “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”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반출·수입물량 보고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4년 10월 및 2025년 10월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)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,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시한)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참고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

구 분	담당 부서명	전화번호
산업통상부	석유산업과	044-203-5229
서울특별시	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	02-2133-3711
부산광역시	첨단산업국 미래에너지산업과	051-888-4692
대구광역시	미래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과	053-803-4925
인천광역시	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	032-440-4344
광주광역시	인공지능산업실 에너지산업과	062-613-3793
대전광역시	경제국 에너지정책과	042-270-0431
울산광역시	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	052-229-6492
경기도	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	031-8030-4242
강원특별자치도	산업국 에너지정책과	033-249-2972
충청북도	경제통상국 에너지과	043-220-3282
충청남도	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	041-635-3470
전북특별자치도	미래첨단산업국 청정에너지수소과	063-280-3236
전라남도	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	061-286-7261
경상북도	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	054-880-7692
경상남도	산업국 에너지산업과	055-211-2294
제주특별자치도	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	064-710-4416
세종특별자치시	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	044-300-4055
한국석유공사	-	1688-5142
석유관리원	-	1577-7055
한국소비자원	-	1372